

# Q&A

## \_01

**Q**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이 서로 다른 지역(시·군·구)에서 생산되는 경우 어디에 신청을 하나요?

**A** 생산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이 속한 시·도·구·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## \_02

**Q**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생산지 중 일부만 폐업을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?

**A** 없습니다. 생산지를 일부만 폐업하는 경우(부분 폐업),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.

## \_03

**Q** 신청 내용과 지자체의 확인 결과가 다를 경우,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**A** 확인 결과통보를 받은 직후 10일 이내에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생산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
## \_04

**Q** 직불금·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면적 기준이 있나요?

**A** 직불금은 품목별 상·하한 면적이 없으나, 폐업지원금은 재배면적의 합이 1,000㎡(0.1ha) 이상이어야 합니다.

**문의** FTA 이행지원센터(1899-4114) 또는 생산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

### 직불금·지원금 지급절차



신청 완료  
(~7월 29일)

01



지자체(시·군·구)의  
서류·현지조사(~9월)

02



지급액 포함한  
직불금·지원금  
지급결정서 통보(11월 중)

03



신청자 계좌로 입금  
(~12월)

04

# 2016

농업분야 FTA 피해 최소화를 위한

# FTA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가이드

- 신청기간 : 2016. 5.30 ~7.29
- 신청장소 : 생산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
- 문의 : FTA이행지원센터(1899-4114) 또는 생산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



## FTA 피해보전직불금

01

올해는 4개 품목에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합니다.



당근



노지포도



시설폐도



블루베리

02

직불금 신청 대상자인지 다음 요건을 확인해 보고

-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,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
\*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
- 지급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
\* 노지포도 '13.5.1(한·터키 FTA), 시설폐도 '14.12.12(한·호주 FTA), 당근·블루베리 '12.3.15(한·미국 FTA)
-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급품목의 재배·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자 (일부 위탁도 포함)
- 상기 4개 품목을 2015년에 생산·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

03

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 
생산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에 신청하세요.

-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(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)
- 증명 서류(본인이 준비해야 함)
  -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 (생산사실확인서, '15년도 판매 기록 등)
  -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(농협의 전산출력물·영수증, 택배영수증 등)
  -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(임대차 계약서, 농장주 확인서,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)

## FTA 폐업지원금

01

올해는 3개 품목에 FTA폐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


노지포도



시설폐도



블루베리

02

지원금 신청 대상자인지 다음 요건을 확인해 보고

-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자
-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
\*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
-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·토지·임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 
\* 노지포도 '13.5.1(한·터키 FTA), 시설폐도 '14.12.12(한·호주 FTA), 블루베리 '12.3.15(한·미국 FTA)
- 폐업지원금 지급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,000㎡ 이상인 자

03

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 
생산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에 신청하세요.

-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(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)
- 사후 관리 이행사항 확인서(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)
- 증명 서류(본인이 준비해야 함)
  - 철거·폐기하려는 사업장·토지·임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  -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입증 서류 (농협의 전산출력물·영수증, 택배영수증, 임대차 계약서, 농장주 확인서,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)